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83
----------	-------

발의연월일 : 2025. 11. 6.

발 의 자 : 이달희 · 고동진 · 서천호
정희용 · 박대출 · 김은혜
김 건 · 김상훈 · 김도읍
강선영 · 주호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순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처럼 소방 공무원이 정의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이라는 단어는 군인과 경찰만을 포함하고 있어 ‘소방’을 추가하여 소방 공무원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

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안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사목 중 “공상군경(公傷軍警)”을 “공상군경소방(公傷軍警消防)”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 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 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 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 ----- --. ----- ----- -----.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 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1. -----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 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 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 痍)를 입고 전역·퇴역· 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 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 軍警) 또는 <u>공상군경(公傷</u> <u>軍警)</u> 으로 보아 보상을 받	사. ----- ----- ----- ----- ----- ----- ----- ----- ----- ----- ----- - <u>공상군경소방(公傷軍警消</u> <u>防)</u> -----

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으로서 사망한 사람	-----
아. ~ 하. (생 략)	아. ~ 하.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